

필요광장

광주비엔날레와 법고창신

〈法古創新〉



김찬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광주비엔날레가 운영혁신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뜻을 올렸다. 혁신의 단서는 대통령을 회화한 결계그림 사태에서 촉발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그간 잠복해 있던 제반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분출되었다.

아시아 최고 비엔날레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던 비엔날레의 패착(敗着)을 개선하기 위한 6개월간의 노력으로 7개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풍부한 행정 및 정책경험을 가진 예술경영 전문가가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 새 체제는 종합발전 TF팀을 꾸리고 4월 초 종합발전안을 마련해 선포할 계획으로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시된 혁신과제는 광주의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를 극대화한 글로벌 비엔날레

의 위상을 위한 정체성, 전문성, 독립성, 경영효율성, 현장과의 소통체계 확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체계 개선을 통해 혁신을 위한 강한 의지가 전명되었다.

그러나 기실 혁신안은 과거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항들이어서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 따라서 혁신안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실제로 주된 혁신과제는 정체성 정립의 문제일 것이다. 모든 것이 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논할 때 ‘광주성’을 운위하지만 그 성격 규명 역시 쉽지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광주비엔날레는 예술계의 자발적 의지보다는 정치적 차원의 타율적 고려에서 출발하였다. 이로 인해 정체성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이 있다.

‘민주화’와 ‘예향’의 서로 상이한 영역을 예술적 제도로 풀어내는 쉽지 않다. 게다가 비엔날레가 다루는 첨단과 현대미술과 예향적 전통의 차이로 인한 지역 정서와의 괴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국내의 역량으로 문제들을 풀어야 했지만 상당부

분을 해외 전문가들에게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국제미술계의 인지도를 높이는 성과는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전시 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 해외 네트워크, 전문인력육성 등 경험의 소산들을 국내에 축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비엔날레재단이 전문적 운영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 데도 기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큰 교훈으로 삼을 때 충분한 교육비용 지불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작년의 주제는 이번 혁신프로젝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비엔날레를 가두어 왔던 틀과 기반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직 정비와 인적 쇄신을 기하는 일은 기초적 여건을 정비하는 것일 뿐, 방향성을 심도있게 구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 제일’을 말하기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광주만의 비엔날레의 위상과 성격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엇비슷한 해외 비엔날레들과는 확연한 차별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광주는 남도문화의 상징성과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정부분을 담지하고 있다. 예향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광주만의 독특한 비엔날레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민주화’는 소중한 개념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사회적 개념으로 이를 해석할 경우, 예술적으로 편협한 가치만을 드러낼 수 있다.

남도에는 마한 이후 면면히 이어오는 전통문화가 엄연히 존재한다. 조선시대 가사문학과 문민화를 기조로 한 독특한 전통문화의 산지이기도 하다.

남인세력들이 꿈꾸던 신세계를 향한 가치관이 형성한 문화적 소산들이 있다. 고산 윤선도를 필두로 이서의 동국진체, 다산 가계의 실학정신이 있고, 남종문인회 의 대종인 허련을 걸러낸 추사와 초의 선사의 정신이 오롯이 남아있다.

남도문화의 원천콘텐츠를 어떻게 현대화함으로써 ‘광주성’을 되살린 글로컬리즘을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이다. 이번 혁신 프로젝트는 풍부한 남도문화의 전통을 어떻게 법고창신하며, 신한류 생산의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바람 피워도 불법 아니겠네?



정철희 광주지법 판사

즉, 형법 제24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형벌을 가하거나 수사기관이 간통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간통행위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간통행위자는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간통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역시 배우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제3자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은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해

당하는 부분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 각국의 간통죄 처벌 법규의 폐지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대책이나 보완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위헌결정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에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오로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을 되새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통행위로 인하여 가족

이 해체되는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 등 여러 분야에서 간통행위자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간통행위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미권의 경우 간통행위를 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불이익을 입는다는 내용을 규정한 혼전계약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혼전계약을 도입하여 간통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결혼 전에 명백히 합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그에 해당하는 책임도 따릅니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우리 사회에 형사처벌이라는 국가의 개입 없이도 가정과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자유에는 그에 해당하는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이렇게 하자



이민원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교수

그럼 양 지역을 통합해야 할까? 그렇다. 통합이 답이다. 광역단체 하나 더 있고 없고가 사실상일 수 있는 시절은 저 멀리 멀리 지나갔다. 하지만 그게 어디 오늘 내일 해결될 문제인가. 그러나 양 지역을 행정적으로 당장 통합하지는 못하지만, 우선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세워 둘인 머리를 마치 하나처럼 작동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양 지역의 시도지사가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양 연구원의 통합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통합되어 있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분리하여 오늘에 이른 역사가 있고,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도 분리 움직임이 있는 점을 해아려 보면 통합의 지지부진이 이해는 간다. 양시도가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만큼 해당지역의 연구에 전념하는 연구원이 필요할 것이다. 양시도 모두 통합연구원이 자기 지역 연구에 소홀히 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고, 통합연구원은 양시도의 요구에 부응하느라 곤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대부분 감정적이거나 지엽적이다. 반면 광주 전남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통합의 필요성은 강력하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든다. 먼저, 통합 주장에 대한 의문이다. 왜 통합을 해야만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분리된 연구원은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다. 다음으로 통합 반대 주장에 대한 의문은 두 가지다. 왜 분리해야만 자기 지역연구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통합하면 자기 지역의 연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가정이 있다. 그리고 왜 분리만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할까? 여기에는 통합의 실현이 어렵다는 가정이 있다.

해법은 세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분리된 연구원이 서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므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리된 연구원이 서로 협조하게 만드는 방법'이 해법이다. '통합하면 자기 지역의 연구에 충실할 수 없으므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합 후에도 자기 지역 연구에 충실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이 해법이다. '통합은 실제로 어려울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천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해법이다. 이 점들을 종합한 해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서로 협조하게 만들려면 양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

는 통합하는 안이다. 하지만 실천가능성과 자기 지역연구 충실도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은 양 연구원에 강력한 연대 기구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안이다. 양 시도에서 연구업무를 총괄할 행정부서를 공동으로 만들고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한다. 이때 수반되는 각종 법률적, 행정적 문제를 검토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시행한다.

둘째, 통합 후에도 자가지역 연구에 충실하게 하려면 통합하되 양시도 연구 전달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다. 다만 상호 협조를 위해 양시도간 연구업무 조정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된다.

셋째, 연구업무 조정은 매트릭스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매트릭스의 한 축은 연구 분야를 동일하게 분류하여 배치된 다음에 양 지역 연구부서 끼리 연계 시키며, 또 한 축은 서로 다른 주제의 연구부서 끼리 연계시킨다. 완전히 통합하는 안과 양 연구를 존치하는 안 모두 양시도간 연구 업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양시도 의회는 하루빨리 양 연구원 통합 논의를 진척시켜 결론을 내기 바란다. 광주와 전남의 통합 발전을 위해.

社說

잇단 산불,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안 된다

주말과 휴일 전남 지역 곳곳에서 밭두렁·쓰레기를 소각하다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마저 거세게 불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8일 오전 11시24분께 장성군 진원면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소방당국과 행정기관, 주민이 총동원돼 진화에 나섰다. 강한 바람으로 불을 끄는데 어려움

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산림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7일 이후에는 진도군 의신면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5ha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은 주민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보성 특량면과 곡성읍에서도 주민이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불이 옮겨 붙어 입야 0.03ha와 철쭉 100여 그루를 태웠다. 소각 금지기간인데도 주민들이 지키지 않아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불은 입산자 실화외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70.0%나 발생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남지역 상당수가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화산순은 소각 산불피해가 최근 2년간 3.85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나무·영양·진도·고흥·구례·신안·순천 등도 소각 산불 경고지역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불은 3~4월에 집중되는데다 불을 끄려다 변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 앞선다. 논·밭두렁 소각은 병해충을 없애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나 오히려 농사에 이로운 곤충까지 죽이게 돼 역효과만 가져올 뿐이다. 그런 데도 지자체는 지도·단속이 겹돌고, 주민들의 의식도 변하지 않아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논·밭두렁 소각은 실익이 없는 만큼 당국이 적극 계도하고 단속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도 소각은 금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산불 발생 시 혼자 불을 끄려 하지 말고 신속히 대피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 문제점 보완해야

교복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주관 구매는 중·고등학교의 교복을 일선 학교가 입찰을 통해 직접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1교·1업체 계약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다 보니 교복 구매 과정의 불평과 품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일부 중·고등학교에선 학생 수가 적은 탓에 교복 업체의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신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사복값 부담도 불가피해졌다.

광주첨단고는 두 차례나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학생 수가 적어 교복 제작 업체 등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완도 금일고의 경우 14명의 신입생을 위한 교복 구매 입찰 공고를 냈지만 참여 업체를 찾지 못했다.

이처럼 광주 지역에서는 23개 교교의 교복 업체 선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교복 착용 시기를 개학일에 맞추지 못했다. 전남 도내에서는 14개 교교가 교복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일선 학교의 혼란만 가중되는 형편이다.

또한 업체가 공동구매에 참여한 경우 교복 값을 학교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미리 교복의 모양이나 질을 살펴보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동구매를 시행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품질이나 디자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

좋은 의미로 시행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특히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 추진 현황을 조사해 소규모 학교 등 지역 사정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선시대에는 물론 왕이 최고 권력자였지만, 중국의 황제처럼 절대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당파(黨派)’로 대변되는 특정 정치집단과 공생을 도모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에는 ‘태군’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신하 임금을 선택한다”는 의미의 태군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

27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왕 10명 중 3명이 독살설에 휘말린 셈이다. 실제로, 친일 지식인으로 알려진 윤치호의 영문일기를 보면 ‘왕의 독살’에 대한 의학적 개연성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설명되어 있다.

최근 3·1절을 맞아 서울대병원 김삼태 교수가 편역·발표한 윤치호의 일기에는 일제가 고종을 독살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 5가지가 나와있다. 무척 건강하던 고종이 식해를 마신지 30분

태군(擇君)

도 채 안돼 심한 경련을 일으켜 죽었으며, 팔다리가 사후 1~2일 만에 엄청나게 부

어왔고, 이가 모두 빠진 상태로 혀는 남아 없어져 버렸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또, 30cm가량 되는 검은 줄이 고종의 목 부위에서부터 북부까지 길게 나갔고, 고종이 숨진 직후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는 점도 독살의 근거로 제시됐다.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의 왕들 가운데 독살된 14명 의심되는 인물을 12대 인종과 14대 선조, 17대 효종, 20대 경종, 22대 정조, 26대 고종 등 모두 8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일제에 점령당하기

까지 518년 동안 조선을 지배한 왕이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